의안번호	제754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4일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54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간 만료('25. 3. 28.)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선정하고

○ 청남대관리사업소를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환경교육도시인 충북도의 위상 정립 및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무 :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운영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일원
(청남대관리사무소 내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사무실)

○ 위탁기간 : 위·수탁 개시일 ~ 2027. 12. 31.

○ 수탁기관 : 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150백만원 ※ '24년 당초예산 기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사무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 도민환경교육의 실시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조사 지원
-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도내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추진 필요성

- 기존 청주시 시설 지정에서 도 시설 지정・운영으로 환경교육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및 전문기관·단체 위탁으로 전문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4. 12.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의 : ’25. 1.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선정결과 공고 : ‘25. 2.

3. 참고사항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사무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정요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충북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함

4. 관계법령 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 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도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조사 지원
5.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8. 도내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행정국장
2. 해당 위탁사무 담당 실·국·본부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참고자료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 사업목적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 지역 환경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지정기간 : 개시일 ~ ‘27. 12. 31.

○ 사 업 비 : 연 150,000천원(도비 100%) ※ ’24년 당초예산 기준

○ 사 업 량 : 충북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 1개소

○ 사업내용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도민 환경교육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 시행주체 : 공개경쟁모집으로 환경교육기관·단체 선정 예정

<現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 >

■ 지정기관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사)풀꿈환경재단 위탁 운영)
■ 지정기간 : 2019. 3. 29. ~ 2025. 3. 28.(6년간), 3년 재지정
※ ’19년 센터 지정 후 ’21년부터 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100%)
■ 조직구성 : 4명(센터장^{비상근} 1, 사무국장^{상근} 1, 간사^{상근} 2)

□ 향후계획

○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4. 11. ~ 12.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심사위원회 심의 : ’24. 12. ~ ‘25. 1.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